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7월 26일(수) 14:00~17:3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공동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개회식 (14:00~14:30)	사회 : 한지영 국민의당 전문위원 ○ 국민의례 ○ 환영사 : 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 ○ 축 사
주제발표 (14:30~16:00)	좌장 :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 ○ 주제1.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주제2.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를 둘러싼 쟁점분석 -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주제3.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토론 (16:00~17:30)	○ 토론 1.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2. 정미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토론 3. 변정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 토론 4.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 토론 5.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 폐회



목 차

환영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1
국회의원 김삼화	3

발제문

1.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5
2.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를 둘러싼 쟁점분석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9
3.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51

토론문

1.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9
2.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85
3. 변정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95
4.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101
5.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105

법 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1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26

환영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님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그리고 뜻을 모아 공동주관을 해주신 성매매 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탁틴내일 (ECPAT KOREA)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듯이 스마트폰 공급이 일반화되면서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그 첫 단계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가출 여성 청소년 성매매 차단’을 위해 채팅 앱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재활 및 교육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100일간의 계획은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로 ‘성매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상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처리과정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을 거쳐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 알선자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와 ‘지원’,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할 성매매 피해자가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김삼화 의원님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당사자 면접과 현장조사,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됨에 따라 보다 풍부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처분 폐지, 사법 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와 관련된 문제가 심도깊게 논의되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님,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주은 입법조사관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님,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덕경 연구위원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정미례 공동대표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변정애 팀장님, 여성가족부의 이금순 아동·청소년보호과장님, 법무부의 소년보호관찰과의 안병경 서기관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권인숙 명지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발제자, 토론자, 모든 참석자들의 소중한 의견 개진과 활발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국회의원 김삼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삼화(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성매매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과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님,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님, 변정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님, 여성가족부 이금순 과장님, 법무부 안병경 서기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는 2010년 528건에서 2016년 1,290건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연 20만 명에 이르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8%가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보호처분을 악용해 성매매에 노출되었던 아동·청소년들을 다시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들의 2차, 3차 피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상아동·청소년의 문제와 관련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세심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에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발제문 1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이현숙 탁틴내일(ECPAT KOREA) 대표

1. 들어가며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고려할 것과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스트리밍서비스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성적 착취에 유인되어 인권이 침해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려워져 국제 사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UN사무국은 ‘성적 착취’를 어떠한 실제적 혹은 의도된 학대-지위의 취약함, 힘 혹은 신뢰의 차이, 성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함을 통해 금전적인 것을 포함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착취에 의한 교환은 금전적 이익 혹은 다른 형태의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보상을 함의하며 예컨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자료(콘텐츠)가 수익뿐 아니라 다른 유사한 물질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 행위를 아동성 착취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엑팍 인터내셔널은 아동성착취를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폭력으로 성착취의 유해성은 아동의 고결함, 존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총체적 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아동성착취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동성착취를 위한 시장 경제가 형성된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도 182차 회의에서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Worst form of child labour)라고 규정하였다.

UN은 이렇게 심각한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들이 사회로의 완전한 재통합 및 완전한 육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들은 피해자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¹⁾

2008년 UN아동 성착취 근절 세계 대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들은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이송(referral) 구조를 확립하거나 혹은 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고 한국도 이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범죄의 대상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며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이송·위탁·소개(referral)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피해 아동이 경찰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랜덤 채팅에서 만나는 사람이 경찰일까 두려워하는 상황만 보아도 한국의 공권력이 제대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²⁾ 청소년 지원체계들은 기능상으로는 성매매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작동이 안되는 곳도 있고, 지원 가능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원 불가능한 곳도 있다.

조속히 성착취 범죄 피해 청소년으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다각적인 이송(referral) 구조가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에 성착취 피해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은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캐나다는 정책적으로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 CSE'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를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음.

출처 :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 김고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2. 청소년 지원체계 분석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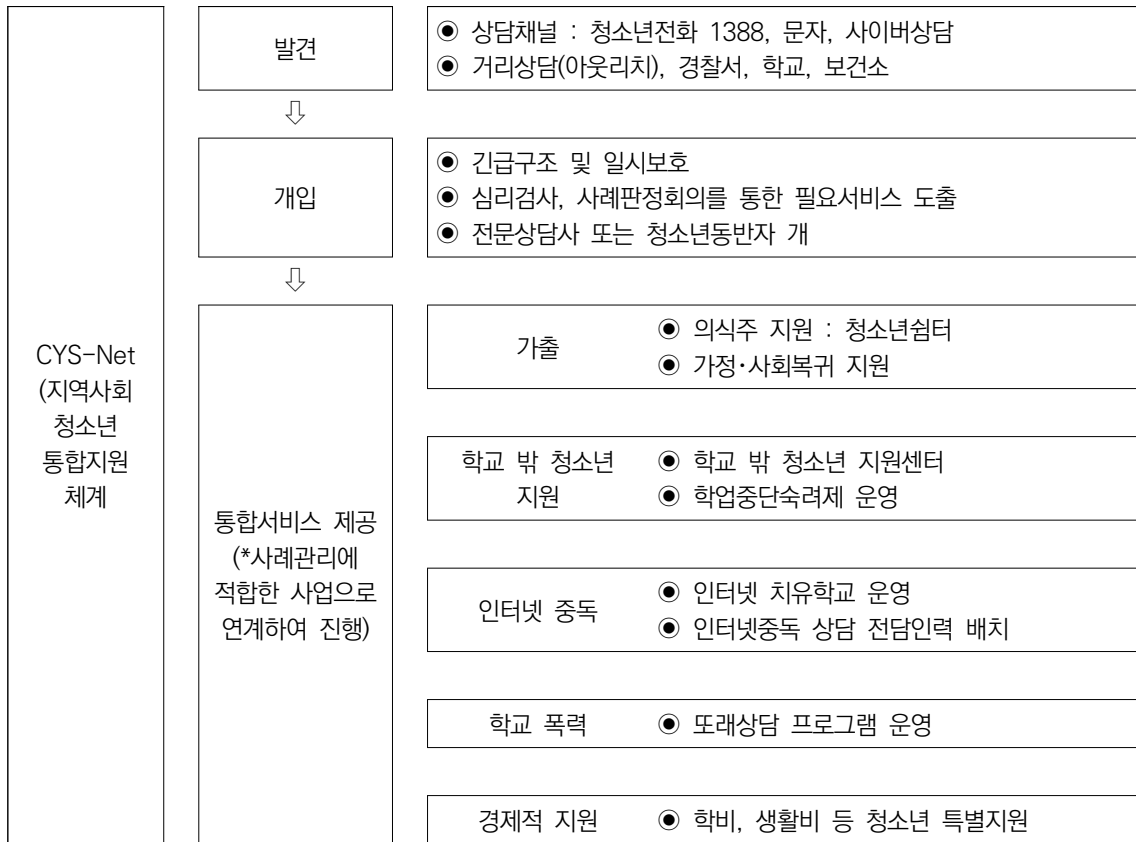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위기청소년 관련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현황

사업 명	주요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CYS-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CYS-Net 운영 규모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4개소('17년 기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 사업목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청소년동반자 배치현황 : 1,146명('17년 기준)
청소년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 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입소대상 1순위 : 9~19세 미만, 2순위 : 19~24세 • 쉼터 운영규모 : 전국 123개소 운영('17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센터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개소)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취업사관학교·취업 성공패키지 연계지원 - (의료·복지) 건강검진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단, 생활·건강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국립중앙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설립목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지속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

(1) CYS-NET

〈표 2〉 CYS-Net 운영 체계



【연계 및 지역자원】 (필수연계기관)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시설 등
 ② (1388청소년지원단)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원활히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조직
 ③ (학교지원단) 학교에서의 지원 센터 상담 의뢰 활성화①

CYS-Net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고 불리며,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9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를 근거로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219개소가 전국에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CYS-Net 연도별 운영보고서를 통해 청소년전화 유형별 호소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족이나, 일탈·비행, 학업·진로,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 받은 건수가 많았으며, 성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한 건수는 비중이 낮다. 성에 대한 문제가 성폭력, 성희롱, 연애, 성매매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세분화된 운영보고서는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CYS-NET 구축 전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범으로 운영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위기개입 현황 및 긴급구조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가출과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았다.

〈표 3〉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 유형별 이용건수

(단위 : 건)

구분	가족	일탈 / 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 계
2008년	25,990	48,786	36,118	21,950	9,098	22,218	13,605	2,787	9,289	121,172	1,353	5,175	36,037	353,578
2009년	25,937	40,669	35,118	21,473	9,901	25,532	16,419	2,522	12,101	181,906	976	7,649	44,539	424,742
2010년	22,839	41,690	34,725	21,702	9,775	24,246	16,888	2,436	13,901	157,544	857	5,692	70,348	422,643
2011년	25,687	44,511	48,648	17,935	11,967	30,449	21,231	2,617	19,047	141,464	880	6,509	61,671	432,616
2012년	24,477	36,524	43,471	16,449	12,328	33,295	27,987	2,416	16,382	129,779	975	7,814	54,034	405,931
2013년	23,437	30,682	42,580	17,519	13,152	37,555	30,238	2,739	16,179	135,764	843	6,169	56,374	413,231
2014년	22,937	28,017	44,742	15,735	13,762	39,726	30,016	2,649	16,329	118,980	805	6,439	60,174	400,311
2015년	25,173	25,688	39,178	14,501	14,206	39,797	32,638	3,159	14,276	108,823	1,016	4,182	53,400	376,037

〈표 4〉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유형별 이용건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가출	106(21.5)	548(19.9)	1,379(41.7)	2,033(31.0)
성매매	200(40.5)	852(31.0)	454(13.7)	1,506(23.0)
근로권	10(2.0)	142(5.2)	157(4.8)	307(4.7)
가정폭력	8(1.6)	41(1.5)	134(4.1)	183(2.8)
학교폭력	52(10.5)	186(6.8)	161(4.9)	399(6.1)
성폭력	6(1.2)	104(3.8)	137(4.1)	247(3.8)

*2003년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림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체계



2015년 5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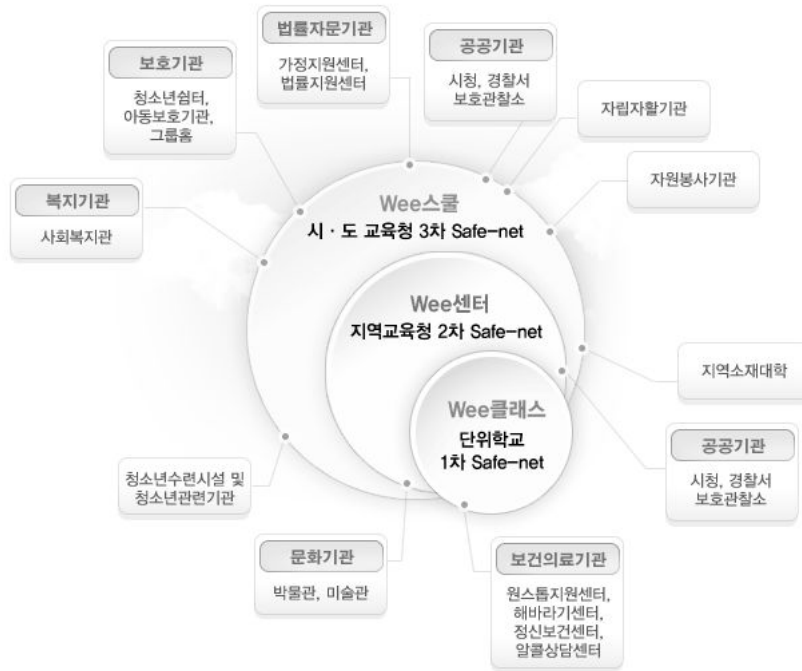
전국에 20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프로그램, 건강증진서비스 등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접수면접(intake)을 포함한 서비스 수혜 청소년 전체 인원수는 33,718명이며, 이 중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관련 주요 서비스를 지원 받은 청소년(A)은 총 29,348명이다. 학업복귀형 서비스를 지원 받은 청소년의 실제 인원은 총 11,818명으로 개인상담 서비스를 지원 받은 청소년이 7,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학업지원 2,666명, 검정고시 대비반(집단) 참여자가 2,4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진입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실제 인원은 총 15,469명으로 두드림 기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8,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풍(직업체험)에 참여한 청소년이 4,318명, 개인상담에 참여한 청소년이 3,35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 성착취와 관련한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학교 기반 지원체계(교육부)

(1) WEE 프로젝트



[그림 2] 학교 및 교육청 중심의 Wee 프로젝트 체계도

CYS-Net이 주로 학교 밖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Wee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육청에 기반을 둔 지원서비스 체제로 교육부훈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단위학교의 Wee클래스에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필요시 2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Wee센터로 의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Wee센터는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Wee스쿨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 및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이나 학업중단자가 포함된다.

Wee프로젝트의 연결망인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은 단위 학교를 시작으로 지역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설치되어 운영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Wee프로젝트의 경우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 2차 안전망인 Wee센터, 3차 안전망인 Wee스쿨의 3단계 서비스 체제이다.

Wee프로젝트는 단위 학교에 설치된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로 의뢰하고 Wee센터에서 Wee스쿨로 의뢰하는 연계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Wee센터와 Wee스쿨의 경우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활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Wee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교육, 상담 및 치료, CYS-Net과 구별되는 지원 내용은 교육 서비스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CYS-Net과 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CYS-Net,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Wee 프로젝트 비교

구분	CYS-Net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Wee center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채널 : 1388청소년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 거리상담(아웃리치), 경찰서, 학교, 보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S-Net 발견체계 활용 : 1388전화, 청소년동반자 등 ● 학업중단 숙려제 연계 : 학교, 교육청과 정보연계 ● 개인, 가족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접수 : 학교, 내방, 기관, 전화상 접수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 심리검사,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한 필요서비스 도출 ● 전문상담사 또는 청소년동반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유형 등 파악 ●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따른 정보 안내 및 목표설정 ● 목표 설정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사례관리자 배정 ● 답답교사 협의 ● 면접, 1차 심리검사: 위기 스크리닝, 자기보고식 검사 ● 개별, 학부모 상담 	
지원서비스 현황	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지원 : 청소년쉼터(119개소) ● 가정.사회복귀 지원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 심리, 진로, 가족 등 문제상담 	상담 및 심리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정서, 지능, 행동평가 ● 개인.집단.학부모 상담
	학교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00개소)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대안학교 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지역특성화 사업 등)
	인터넷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치유학교 운영 ● 인터넷 중독 상담 전담인력 배치 	직업 체험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활동, 경제활동 참여, 직업지원 	지원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기관 연계, 전문가와의 협조
	학교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가족관계개선 사업 등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치료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모래, 미술, 사회성, 게임) 약물치료, 입원 및 통원치료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 생활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 및 서비스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 여가활동, 예체능, 과학, 특기적성 농어촌 등 환경 연계지원 프로그램 	사후 평가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평가, 교사와 보호자 등
	건강 증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기타건강생활 : 금연, 금주, 성, 비만클리닉 등 ● 체력관리 : 체육프로그램 제공 ● 예방접종: 연령대별 예방접종 제공 	추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기타(지역연계 프로그램)	【연계 및 지역자원】 ① (필수연계기관)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 시설 등 ② (1388청소년지원단)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원할히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조직 ③ (학교지원단) 학교에서의 지원 센터 상담 의뢰 활성화	① 두드림 프로그램 :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자립 준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는 자립준비 프로그램 (6학기, 심화과정 직업체험, 경제체험, 진로캠프 등 취업연계) ② 해밀프로그램 :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여 학업복귀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학업동기향상, 맞춤형 학습클리닉, 검정고시, 인터넷강의, 학업복귀 후 학습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대비반, 대학탐방, 기타체험활동 등으로 구성) ③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 동기화상담, 공부방, 멘토링, 직업체험(인턴십), 문화예술체육체험교실, 자격증취득반, 졸업식 등	①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지역특성화 사업(길거리 상담, 공연관람, 캠프, 영역별 프로그램 등) ② 학생교육 (학교폭력, 성교육, 인터넷중독, 금연, 학교적응, 진로), 교사교육(위기학생의 이해, 상담, 학교폭력, 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3) 보건복지부

(1) 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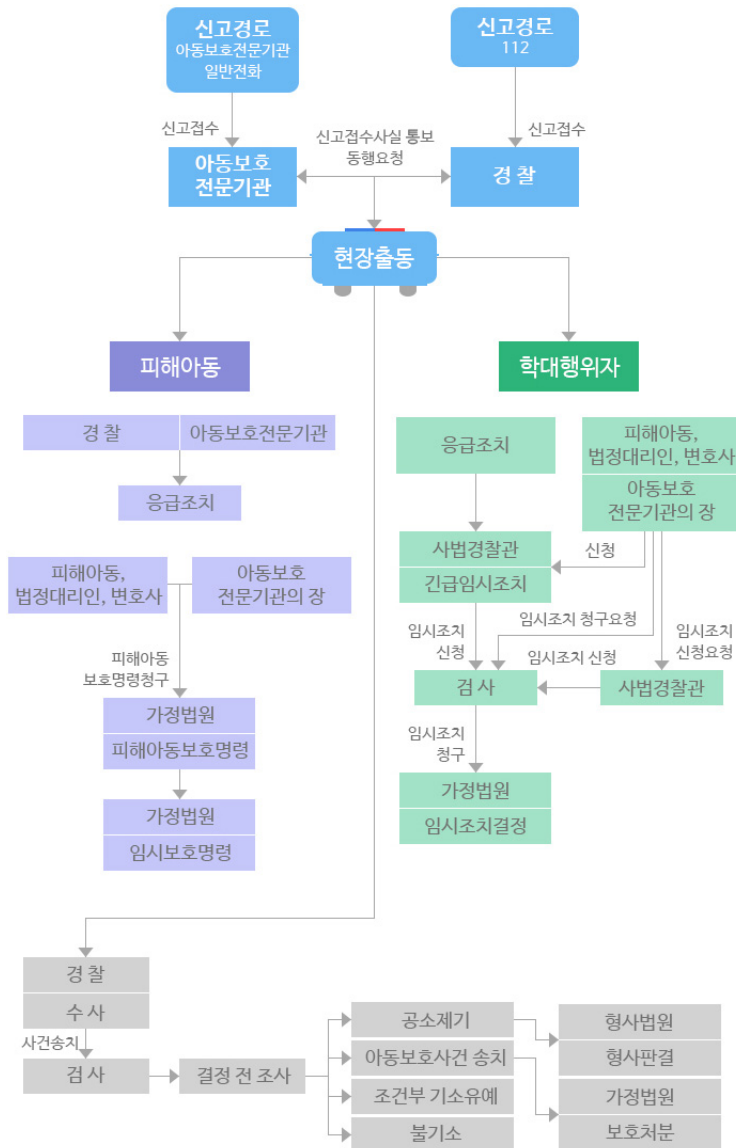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를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1년 10월 설립되었다.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 연구 및 자료 발 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평 가, 상담원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는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지역아동보 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다. 그리고 그 산하에 특화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법률기관, 보호관찰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기관 등과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체계 를 갖추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 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성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매매 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만18세 미만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015년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0.7%, 성학대가 3.6%로 보고되고 있는데 성폭 력과 성매매를 구별하고 있지 않아 성착취 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진행도



〈표 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4	46	50	51	55	59
학대피해아동쉼터	-	-	-	36	40	53

* 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부터 통계 관리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5 보건복지백서.

〈표 6〉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유형		건수(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체학대		753(11.1)	1,453(14.5)	1,884(16.1)
정서학대		1,101(16.2)	1,582(15.8)	2,046(17.5)
성학대		242(3.6)	308(3.1)	428(3.7)
방임		1,778(26.2)	1,870(18.6)	2,010(17.2)
중복 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749(25.7)	3,440(34.3)	4,009(34.2)
	신체학대·성학대	21(0.3)	18(0.2)	20(0.2)
	신체학대·방임	153(2.3)	191(1.9)	167(1.4)
	정서학대·성학대	29(0.4)	39(0.4)	65(0.6)
	정서학대·방임	471(6.9)	513(5.1)	495(4.2)
	성학대·방임	6(0.1)	9(0.1)	8(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3(0.8)	51(0.5)	88(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11(6.0)	531(5.3)	475(4.1)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0.0)	2(0.0)	1(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9(0.1)	7(0.1)	2(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0(0.3)	13(0.1)	17(0.1)
	소 계		2,922 (43.0)	4,814 (48.0)
계		6,796 (100.0)	10,027(100.0)	11,715(100.0)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 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1) 성매매 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표 7〉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구분	시설종류	입소 이용 대상 (기본 입소 기간)	주요 기능	연장사유 및 기간
생활 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전국 14개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등(19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제공, 전문상담 • 의료·법률지원 • 사회보장 및 급부수령 지원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 진학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법정대리인 동의)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자립지원공 동생활시설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주거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이용 시설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 현장방문 상담 • 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 	-

구분	시설종류	입소 이용 대상 (기본 입소 기간)	주요 기능	연장사유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 수행 (14개소) 등 	
	자활지원센터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성매매 여성 자활역량 강화 • 전업준비를 위한 훈련 • 공동 작업장 등 일자리 제공 • 취업 및 창업 지원 • 외부 자원 활용 연계망 구축 • 취업 창업자 사후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기본 이용기간 포함 최대 4년까지 이용 가능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 사회 적응 강화 훈련 지원 등 	-

[그림 5]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전달 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실시간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전담 거점 기간 부족으로 조기 발견 → 상담 → 교육 → 의료 및 주거지원 등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가출 청소년들은 입소 시설

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시설 보호 중심의 제한된 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기반으로 전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이고, 2017년 현재 전국에 11개소(중앙1, 지역10)가 설치되어 있다(조진경, 2016). 치료·재활 사업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거주지 지원 및 학력 취득 및 취업 준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참여 청소년은 16세에서 19세 고등학교 재학생이 가장 많았고 재학 청소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위의 목표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력 부족과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지원 내용도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1년 단위 프로젝트 사업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기관도 많지 않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3) 거점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시범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와 모바일 기기의 발달이 청소년 성매매 유입통로로 활용되고, 청소년이 성매매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거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예방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가출청소년유해환경 유입방지 및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2017년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³⁾ 총 예산은 연간 7천만원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와 자활지원센터 2개소에 위탁하였다.

주요 역할은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거점 기관으로서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긴급 보호, 심리치유, 매월 정기적인 아웃리치, 온라인 상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자활지원센터는 자립·자활교육, 심리치유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직업체험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피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율을 높이고 청소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및 지원 기관 간 연계구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정된 자원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어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3) 2017년도 거점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소 등 운영[시범사업] 계획, 여성가족부.

(4)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있으며, 위기지원 센터는 16개소, 아동·청소년 센터는 8개소가 있다. 통합센터는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on-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아울러,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의료지원,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치료, 심리평가 등이 있다.

2017년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운영 매뉴얼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2017년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지원내용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수사 및 상담의료, 심리 상담지원, 의료비, 돌봄비 제공 등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공지되어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는 의료지원에 대한 사항만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접수에서부터 수사, 상담, 법률, 의료,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기타 복지제도 등 상세하게 운영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성매매 청소년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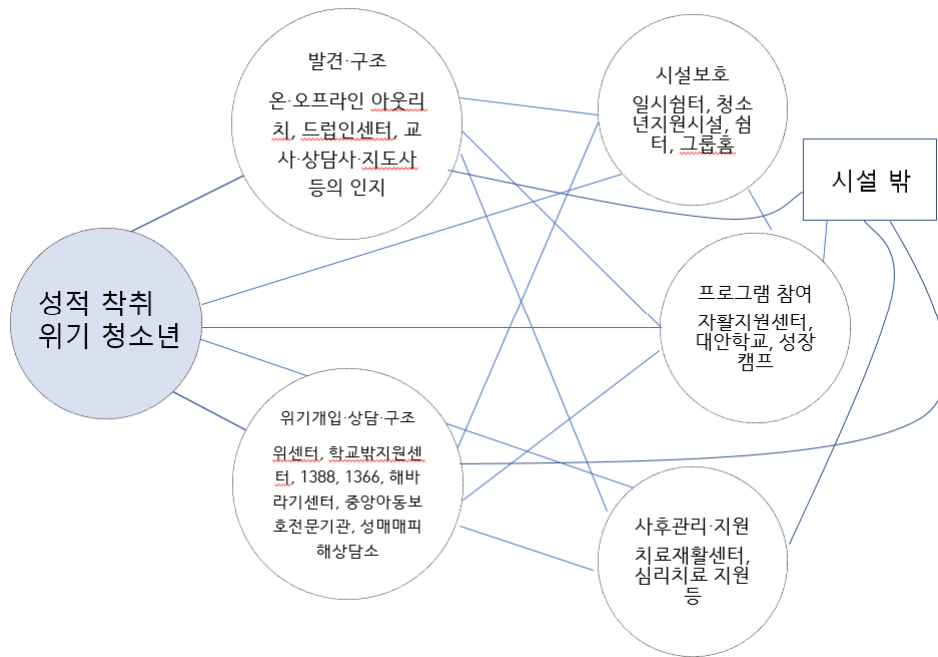
여성가족부(2016)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원 피해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실적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대부분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유형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연령에 대한 부분에도 아동·청소년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비율과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실적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바라기센터 지원 대상이 아니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체계 문제점

지금까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가능한 지원체계 서비스 흐름



현재 성매매 청소년 지원체계는 시설중심의 지원체계 중심이며, 특히 ‘쉼터’ 중심의 지원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은 대부분 기관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외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들을 이용한다.

1388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가 있으나, CYS-NET을 통한 시설 및 기관은 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다(성운숙, 2009). 대부분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센터 및 상담소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국가인권위, 2016). 이중 성매매 피해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상담의 특성 때문에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는 시설입소, 시설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성운숙, 2009). 성인 성매매피해 여성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수에 비해 시설의 수가 적고,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YS-Net,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Wee센터는 종합적인 청소년 위기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의료지원, 검정고시, 학업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을 늘리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 하고 활성화해야 한다(성운숙, 2009).

4.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WePROJECT 글로벌 얼라이언스⁴⁾는 피해자를 찾아 밝혀내고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 및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노력을 증진할 것과 아동 그루밍과 새로운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생산 및 배포로 이어지는 - UCC 형태의 제작을 포함 - 아동의 온라인 활동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의 이용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아동 성학대물에 연루된 아동의 재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 발견, 위기 개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현 지원체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리오선언문 등은 성착취 범죄의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적 동의 연령⁵⁾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동의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성년

4) WePROTECT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온라인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행동에 전념하는 국제적 연합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들을 모아 현재 전세계 70개국,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기술산업의 유망한 20개 기업 및 17개 선도적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으로 있다. 2015년 11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WePROTECT 정상회담에서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영국 내무부는 WePROTECT와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합해 WePROTECT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출범의사를 밝혔고 이를 통해 온라인 아동성학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영향력과 전문지식 및 자원을 가진 단일한 국제적 운동을 탄생시켰다.

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범죄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이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 아동의 취약함을 파고드는 가해자와 이를 용인하는 사회에게 책임이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그루밍에 대해 이해하고 법과 제도, 지원체계에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루밍은 낯선 사람, 아는 사람, 가족,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루밍이라는 특성을 이해하면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에 그루밍 상태에 있었다면 그만큼 회복 속도도 더딜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도움의 끈을 잡고 있으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온다. 단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다. 사회는 당장 청소년들이 도움을 거절하더라도, 지원체계에 들락날락하기를 반복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련 지원 체계의 성착취 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 전문성 강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다른 위기청소년들의 겪고 있는 문제보다 좀 더 복잡하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성착취 피해는 더욱 심각하고 치료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이 청소년 지원체계 안에서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문성은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5)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 연령(Age of consent)로 성관계를 이해하고 동의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만 16세~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미성년자가 13살 미만인 경우, 형법 305조는 '13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로 처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
- ③ 미성년자가 13살 이상~19살 미만인 경우, 자유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어도 속아서 했다거나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
- ④ 미성년자가 13살 이상~19살 미만인 경우,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했어도 대가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처벌

여성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도 또다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아동학대, 성폭력의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은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피해의 형태에 따라 지원체계를 구분하기 보다는 모두 아동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고 아동학대, 성폭력,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는 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 조기 발견 및 지원 가능하도록 Wee센터, CYS-Net,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 내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전담 지원하는 인력을 두어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있는 대상 아동 청소년 개념을 삭제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도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에 지원이 아동학대와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3) 거리 활동(On-Off 포함)에 기반한 통합지원센터 신설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포괄해야 한다.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경로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또래의 권유, 보도방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빗이나 업주의 폭언, 강요, 보증 등의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 스스로 ‘성매매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피해자로 보는 시선 자체를 불쾌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찰에 알리면 본인도 처벌받는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스스로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서 친밀감도 쌓고 정보도 제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성착취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아웃리치와 구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또, 상담소 아웃리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오프라인에서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일반 가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청소년, 빈곤 청소년, 학대 피해 청소년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앞에 열거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문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생존방식을 터득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현재와 같은 지원 체계로는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개입하고, 상담과 치

유, 자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청소년이 제 발로 찾아오거나 경찰에 검거되어 오기 전에 찾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신뢰를 쌓는 전문 아웃리치 요원들이 상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아웃리치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거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온라인 공간에서 상시적인 거리 활동을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 가출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나름대로 대안 가정을 만들고 유대감과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범 죄나 착취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들의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즉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검정고시 지원, 아르바이트 연계, 인턴십 등 자활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 등 건강한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일을 구하기 어렵다면 지원체계 안에서 이 문제를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 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학교를 다닐 의사가 있다면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특별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되었던 현 CYS-net의 전신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참고하여 24시간 상담, 구조, 아웃리치, 긴급보호 중심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웃리치와 구조, 긴급보호를 통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유대감을 충분히 형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연계는 기능상의 연계가 아닌 청소년의 특성, 기관과 기관 근무자의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청소년과 잘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성과 연대 활동이 중요하다.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리교육가’처럼 거리의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상담·구조 활동과 기관을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는 다른 업무에 영향 받지 않게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은 아이들을 발견하고 구조하고 연계하는 것이 핵심 활동이 되어야 한다. 운영 방식은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고 드립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명 (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7(2), 165-192.
- 구본용 (2013). 20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결과 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권 승 (2016).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고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 연구.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김란희(2015).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 김태완 (2010). Wee프로젝트 매뉴얼 3. Wee센터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 성윤숙·박병식·박나래 (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5).
- 이유진 (2014).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Ⅱ.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한국청소년저책연구원 워크숍.
- 차정섭 (2010).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3판-. 한국청소년상담원.
- 최상근 (2011). Wee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봉선·남미애 (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인권위원회 (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 날 다시 일으키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 여성가족부 (2017).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발제문 2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를 둘러싼 쟁점분석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¹⁾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I. 서론

1. 들어가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으나, 최근 성인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1997년에 청소년 성매매(일명 ‘원조교제’)가 언론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우리사회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관련법을 제·개정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대응책이 있었음²⁾

최근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기존 성산업 구조의 공급원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성매매 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어 성매매 유입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음

아동·청소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아동·청소년’³⁾으로 규정됨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1) 이 발표문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9월 초 발간예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 실태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으로 작성 중인 현장조사보고서의 거친 초고 중 일부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 대한 인용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2000년 2월 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0. 7. 1.)이 제정됨.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 하고 있음. 더불어 청소년의 성을 산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가 포함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2차 (전부)개정(2009. 6. 9)되면서 법률명이 지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성폭력피해자의 상담·수사·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으며, 형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국선변호를 선임할 수 없음

대상아동·청소년은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동법 제38조제1항)되어 있고, 외관상 자발성을 띠고 있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되거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⁴⁾은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된 대상아동·청소년은 위험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처벌과 보호처분에 따른 사회적 낙인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확대되도록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이 발표문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중심이 된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 실태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 제도의 개선관련 입법방향,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이 발표문의 내용은 대상아동·청소년의 개념관련 입법방향,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정함

2. 연구방법과 내용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 실태를 조사하고,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관련 제도개선을 개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조사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임

문헌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국회 안팎에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지원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전문가 간담회 자료 및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함

3. 현장방문 일시와 방문기관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활동은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짐

여성가족부 소관의 지원시설과 법무부 소관의 기관을 모두 포함함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제1호처분(보호자등에게 감호위탁)~제10호처분(장기소년원 송치)으로 이루어져 있음

방문기관 중에서 1번~4번, 7번, 10번은 모두 여성가족부 소관의 지원시설임

방문기관 중에서 5, 6, 8번의 기관은 법무부 소관의 기관임

방문기관 중에서 9번 기관은 소년보호처분의 6호처분시설로써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관임

[표 1] 현장방문 일시 및 방문기관

순번	일자	시·도	면담대상자
1	2017. 2. 28.	경남 창원시 지원시설(로템의 집)	원장
2	2017. 4. 11.	대전 광역시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소장
3	2017. 4. 20.	전남순천 소재 지원시설	법인대표 센터장
4	2017. 4. 24.	대구광역시 소재 지원시설(수지의 집)	원장
5	2017. 5. 15.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교무과장 상담 선생님 청소년 당사자
6	2017. 5. 1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상담 선생님
7	2017. 5. 22	서울소재 지원시설 (새날여는 청소년쉼터)	원장 교사
		늘푸른 자립학교	청소년 당사자
8	2017. 5. 23.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청소년 당사자
9	2017. 5. 29.	마자렐로센터 여자청소년 보호치료 수탁기관	원장
10	2017. 6. 26.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 샘	상담원, 시설장

II.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 현황

1. 관련 법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7호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을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과 개념상 구분하고 있음

동법 제38조제1항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39조제1항은 “검사는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동법 제2조제4호다항에서는 성매매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5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우선적용을 받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업무를 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까지 포괄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아동·청소년은 동법 제 제39조(소년부송치),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에 근거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대상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근거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0조

사업 대상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이 통보된 청소년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아동·청소년

사업 내용

대상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4박 5일 또는 5박6일 숙박교육)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내외(기본과정 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참여 전·후 청소년 대상 1:1 개별상담, 쉼터입소 연계, 법률 및 의료지원, 자립·자활 지원, 진학·진로 지도, 멘토 지원, 교육수료 청소년 대상 지지모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전국 11개소(중앙 1기관, 지역의 10기관)

나.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근거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1조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 대상

대상아동·청소년

입소·이용 기간

19세가 될 때까지(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사업 내용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사회보장 급부수령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진학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 연계 등

시설 수

2017년 1월 기준 전국 14개소(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전남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2개소)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근거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업 대상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사업 내용

상담 및 현장 방문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 등의 구조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시설 수

2017년 1월 기준 전국 29개소(국비 미지원 시설 2개소 포함)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거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사업 대상

가출 등 위기청소년

사업 내용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두드림 존’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시설 수

2017년 1월 기준 전국 199개소

마. 청소년쉼터

근거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업 대상

가출 등 거리위기 청소년

사업 내용

현장지원 및 보호(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 등)

조기개입(사회성향상 지원, 정서지원, 거리아웃리치 등)

연계활동(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등)

가정복귀 지원(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족상담 등)

사회복귀지원(정보제공, 사회적응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진로상담 등)

시설 수

2017년 1월 기준 전국 123개소

[표 2] 대상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기능과 역할(여성가족부 소관)

구분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목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사업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진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 지원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상담기능 수행	가출청소년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교육, 학습·문화활동 등의 지원으로 비행·탈선 사전예방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가출 등 위기청소년	가출 등 거리위기청소년 ①노숙청소년, ②배회청소년, ③가출,

구분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유형	이용시설	입소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장캠프 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 -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연차보고서 발간, 배포 등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 수령 지원 -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현장 방문 -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 '두드림 존'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 및 보호(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 등) 조기개입(사회성향상 지원, 정서지원, 거리아웃리치 등) 연계활동(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등) 가정복귀 지원(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족상담 등) 사회복귀지원(정보제공, 사회적응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진로상담 등)
기관수	- 전국 11개소 (중앙 1, 지역 10)	- 전국 14개소	- 전국 29개소 (국비 미지원 시설 2개소 포함)	- 전국 199개소	전국 123개소
특이 사항	-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	- 입소기간 : 19세가 될 때까지(필요한 경우 2년 연장)	- 의료·법률 지원(1인당 760만원 범위, 3년까지)	전문 상담활동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일시쉼터(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0개소 단기쉼터(3개월 이내)

구분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연계 실시 - 기본교육과정(40시간), 심화교육과정(20시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청소년 사전 상담 지원 - 교육수료 후 1년 이상 사후지원	가능) - 의료·법률 지원(1인당 760만원 범위, 3년까지)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자활지원, 사후 관리,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사업 실시	단기보호) *53개소 중장기쉼터(3년 이내 중장기보호) *40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를 재구성함(2017)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청소년의 보호

가. 수사

경찰서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생활질서과(생활질서계)임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 업소 단속 중심의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 의견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함

검찰단계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후 기소유예(교육상담 이수명령) 혹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음

기소유예가 되면,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이수결정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나. 소년보호처분 관련 기관

법원 소년부

대상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은 소년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 관할임

소년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 검사, 법원임

이 외에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소년을 관할소년부에 알려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촉구(즉 통고)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법원의 심리결과 대상아동·청소년은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기타(형사법원 송치)로 처분되고 있음

소년분류심사원⁵⁾

임무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분류심사 및 주간출석 상담조사, 법원의 조사·심리자료로 제공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함

위탁기간

1월 이내 위탁, 단 1회에 한하여 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함

보호처분 관련 시설

1호(보호자 위탁) 처분시설(일부 여가부 소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2호(수감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5호(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시설(보건복지부 소관)

전국에 9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임

마자렐로 센터(서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서울), 성바오로청소년의집(대구), 늘사랑청소년센터(대구), 효광원(대전), 나사로 청소년의 집(경기), 로템청소년학교(충북), 희망샘학교(전북), 동해청소년학교(경남)

7호 처분시설

병원,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인 대전소년원이 운영되고 있음

소년원학교

소년원송치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3. 자립지원

자립지원정책과 관련한 기관은 늘푸른자립학교⁶⁾ 1개소임

5) 기관명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임.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함(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6) 늘푸른자립학교는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자립지원기관은 (비인가)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음
 진로탐색수업을 위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자기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가 완성되면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 자립준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Ⅲ.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의 문제점

1.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의 미비

아동·청소년이 하는 성매매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즐톡 랜덤채팅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반하여, 미성년자인 대상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자로 간주되고 있음

대상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이고 자발/강요라는 구분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 대부분의 성인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7)에 근거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성매매자로서 성매매사범으로 처벌받고 있는 현실임

조사관이 방문하였던 보호관찰소에서 성매매유입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2명의 청소년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었고, 경찰이 최근 10년동안 입건한 대상아동·청소년은 모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근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통계처리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은 성폭력과 경계에서 성매매라는 범죄의 피해를 경험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대상아동·청소년은 상담·수사·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고, 형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음⁸⁾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재판과정에서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장소’, ‘아동·

7)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제1항에 근거하여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은 변호사선임의 특례를 적용받지만 대상아동·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청소년 증신신문시 차면시설'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들을 피해자로 보며 적절한 보호를 하기 어렵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대상아동·청소년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폭행, 절도, 강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성폭력, 유해화학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명을 갖고 있는 소년범죄자와 동일한 소년보호처분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2017년 6월 15일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아동·청소년 혹은 성매매 관련 법 위반으로 전국의 관련 시설에서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총 62명임¹⁰⁾

이 중에서 2017년 6월 15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제6호 시설에 성매매 관련하여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은 총 16명임

※ 2016년 6월 15일 기준 여성가족부 소관 전국의 지원시설(일반지원시,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은 총 153명이고, 시설을 이용만 하는 청소년은 23명임

[표 3] 성매매 관련 소년부 송치 아동·청소년(2014~2016년)

(단위: 명)

	소년부 송치			총계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처분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	
2014년	15	0	0	15
2015년	47	1	9	57

9) 2015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34,075명, 100.0%)을 살펴보면, 상해(3.1%), 폭행(3.0%), 절도(41.9%), 강도(0.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1%), 「도로교통법」(5.4%), 성폭력(2.6%), 유해화학물(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0.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3.6%), 기타(27.0%)임. 지난 10년간 소년에 대한 1심 형사공판사건의 재판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년부 송치임. 2006년에는 소년형사공판의 37.5%가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30%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에는 55.9%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 2012년 57.4%, 2013년 63.05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58.3%, 2015년 56.3%로 소폭 감소함(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P.604)

10) 이 중에서 남자 청소년은 1명이고, 이 중 13명은 6호처분(11명), 8호처분(1명)과 병과됨

	소년부 송치			총계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처분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	
2016년	64	2	9	75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2017)

소년보호처분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품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소년을 교화하고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처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1호부터 5호까지의 보호처분도 일정한 수준에서의 활동제약을 수반하고 6호처분부터 10호처분까지는 시설에 감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과 같은 효과를 갖게 하고, 청소년들도 ‘처벌’로 인식하고 있음

성매매를 하는 성인여성은 오히려 훈방되는데, 오히려 미성년자는 더 크게 처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별명이 불사조예요. 저는 성매매 2달 하다가 검거돼 바로 검찰로 넘어가서 양재동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고 1호, 4호 보호처분받았어요. 그나마 저는 집에서 지내면서 단기보호관찰 받으면 되지만 저랑 비슷하게 한 제 친구들은 소년원 가서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 처벌이 센거 같아요.

(성매매 피해청소년과의 인터뷰)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부족

가. 기관 간 연계부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며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호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경찰청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한 대상아동·청소년 인원은 경찰청 자체 성매매처벌법상 처리한 ‘여자청소년’의 규모와 다른 상황임

경찰청의 키스통계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상 처리한 ‘여자청소년’의 수는 135명(2010년), 143명(2011년), 81명(2012년), 51명(2013년), 63명(2014년), 123명(2015년), 203명(2016년)임

[표 4] 여성가족부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아동·청소년 인원

(단위 : 명)

연도	통보 인원
2010	53
2011	128
2012	29
2013	45
2014	136
2015	190
2016	241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7)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경찰의 여성가족부에게 통보, 검찰의 교육상담 이수명령 등에 의해 여성가족부에 통보함으로써 대상아동·청소년에게 4박5일간의 집중적인 숙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업무협조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현장조사결과, 법무부 소관의 시설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시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숙박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있었으나, 많은 대상아동·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숙박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관련하여, 분기별로 1회씩 실시되는 전국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경찰청과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5박6일 숙박교육형식으로 실시되는 교육생을 모집하러 다녀야하는 형편임

나. 관련 매뉴얼과 수사기법의 부족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생활질서과(생활질서계)와 검찰단계, 법원단계에는 별도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경찰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는 『여청수사매뉴얼』에 근거하여 수사를 하고 있음

성매매 피해청소년과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찰조사단계에서 인간적 모멸감을 견디며 수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보호와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음

경찰이 대부분의 합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가 아닌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청소년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검거된 여성·청소년들은 성매매를 숨기기 위하여 성구매자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구매자들과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음

성매매 단속에 걸린 청소년들은 자신이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움츠러들면서 경험한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제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돼 서울시 OO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복 입고 화장도 안했어요. 근데 귀걸이는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봐라봐라 저게 학생 꼴이나”면서 사진찍으라고 하더라고요. 학생꼴이 아니라고 사진찍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제 사진을 찍었고, 경찰조사서 뒷 장에 제 사진을 붙였어요.

(성매매 피해청소년과의 인터뷰)

제가 앱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봤더니 그 남자가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를 미행해서 모텔에서 저랑 남자(성매수남)을 잡았어요.

(성매매 피해청소년과의 인터뷰)

IV. 개선과제

1.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보호체계의 확보

대상아동·청소년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로 바라보고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¹¹⁾

11) 관련하여 제19대국회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5. 8. 7., 의안번호: 1916340)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됨. 제20대 국회에서도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여,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념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6. 8. 8., 의안번호: 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2017. 2. 13., 의안번호: 5598)이 계류 중임

대상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인식되어 대우받는 근간에는 성매매 여성이 구매자와 함께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범주화되어 처벌받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제1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성매매여성이 처벌받지 않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¹²⁾하고 있는바, 명실상부하게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바라보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아동·청소년이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보호처분제도의 목적과 역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 소년법과 유사한 처우를 받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피해자 개념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할 것임

다만, 피해자는 피해자이되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관련 법에서 현행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로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으로 동질화된 범주로 들어가기 보다는 다른 식의 개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가. 기관 간 연계강화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형성될 주제는 ‘소년법 적용 등 선도보호 관련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이고, 통과 후의 쟁점은 지원체계의 방향과 관련될 것으로 판단됨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 「소년법」 제32조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을 정도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함¹³⁾. 범죄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소년보호사건의 목적과 역사를 참고할 때, 대상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조항을 삭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13)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2014헌마768), 중국결과: 기각, 중국일자: 2015. 12. 23.

제하는 것은 보호처분제도와와의 모순, 충돌하는 측면이 존재함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기존의 청소년 혹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보호지원 분야를 특화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설을 설립할 것인지와 관련해서임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성매매와 관련된 다른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처우의 원칙도 수립해야 함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였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알선(일명 ‘포주’)을 하게 되기도 하고 협박, 사기, 폭행 등의 죄에 연루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피해자로 보호 받더라도 범죄소년의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큼

소관부처간 타부처가 운영하는 시설정보를 공유하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나. 관련 매뉴얼 마련 등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의 전문화

수사단계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존중이 실현되고 성매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관련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역시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수사 관련 전담부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¹⁴⁾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함

대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및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법원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가 지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관련 재판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 새롭게 관련 재판부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 성매매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에 관련 교육이 의무

14) 정현미·장명선·조진경·이기연·박숙란·김현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6.

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성매매피해와 관련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도 피해자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관련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함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사범을 검거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를 금지해야 할 것임

수사기관에서는 함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로 하여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참고문헌

- 정현미·장명선·조진경·이기연·박숙란·김현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6.
- 변정애,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17. 1.
-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6. 11.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발제문 3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1. 사례로 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수 범죄 실태와 지원의 현실

1) 죽어야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

2015년 3월에 발생한 성매매에 이용되고 살해된 14세 소녀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알선 범죄자 3인이 소녀의 배후에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이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알선자 3인은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 중 1인은 죽은 14세 소녀를 사랑한다며 꼬여 동거를 하고 핸드폰 ‘즐톡’ 어플을 통해 성매매수자와 조건을 합의한 후 차량으로 소녀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살해된 소녀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고 자신들은 단지 정보를 제공했을 뿐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살인을 한 성매매수자는 40년, 알선자 3인은 각 10년, 6년, 4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인 14세 소녀가 살해되지 않은 채, 경찰의 합정수사나 현장 검거로 체포되었다면 14세 소녀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보호처분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는다 생각하여 현행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알선업자들의 지배를 보호로 생각하여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죽어야 비로소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2016. 4.)

- 사건배경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 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 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의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 수준인 만 13세 아이가 가출하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났던 십여명에 달하는 어떤 성인도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아이를 성폭행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를 안심시킨 후 횡설수설하는 아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정신병원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기가막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보호사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사건은 2종류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가출한 후 당한 성폭력 사건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2차 성폭력 사건으로 따로 분류하여 진행되었으나 첫 번째 가출후 성폭행당한 사건은 아이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개설했고, 떡볶이나 치킨 등을 얻어먹었다 하여 자발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성폭력사건을 지원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성폭력피해가 아닌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아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에 의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사건으로 인지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 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아이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선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 항고하려했지만, 국선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이라 더 이상 국선변호사로서 사건을 변호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 결정된 가해자 2인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 경과

2014.7.8	해와나무 상담소 서은미 소장(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 통해 사건 의뢰됨.
2014.7.14	7.14 당시 피해자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중이어서 외출시, 방문 상담함.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6. 6 핸드폰 액정을 깨트린 실수로 모친에게 혼이 날까봐 가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뒤, 이후 만나게 된 남성들 6명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들이 진행중임을 파악함. 내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사건 직후인 6. 15부터 상담 의뢰된 이후인 10월까지도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가장이었던 모친 역시 사건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하며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2014. 12	6명의 가해자 중 12. 24 표**와 12. 31 이**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됨을 알게 되어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논의하여 항고장 제출 뒤, 재기 수사 결정됨. 그러나 표**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6명의 가해자 형사 공판 종료 후 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모친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보상을 위해 각 건마다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 변호사)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2015. 2	가해자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최석봉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일부 승소함(서울동부지법).
2015. 4	가해자 최**: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6 본 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5	본 건의 피고인 양**: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선고됨. 선고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으로 생긴 공백으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되어 판결 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진수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28 원고 패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6	가해자 하**: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검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수진 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7. 6. 원고 일부 승소함.
2015. 9	가해자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피고인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2015. 11 본 센터 법률지원단장 서순성 변호사, 기희광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6. 원고 패소함. 항소하여 2017. 1(?) 일부 승소함.
2016. 5	같은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김**와 본 건 양**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패소한 양**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항소장을 2016. 5. 16 제출하여 2016. 10. 일부 승소함.

-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표]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가해자	형사재판부	판결내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담당 변호사
양OO	서울동부지법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패소, 항소 일부 승소	배진수 변호사
하OO	서울북부지법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북부지법 일부승소	배수진 변호사
최OO	인천지법	징역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서울서부지법 승소	김병희 변호사
김OO	전주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승소, 배상금 일부인정	최석봉 변호사
표OO	대구지검 재기수사 결정	기소중지(소재불명)		
이OO	서울동부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법 1심 패소, 항소 일부 승소	기희광 변호사

이 사건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지원체계, 아동법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드러난 문제점

① 편의적 수사, 성의없는 수사, 전문성없는 수사

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됐는지?

-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4세(만13세 2개월)였음과 경계성 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 가출 1주일동안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의 사건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사건으로 수사
- 연령 및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단순한 적용
- 스마트폰 어플에 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제안한 것으로 인지(대상청소년 개념 적용)
- 떡볶이, 치킨 등을 얻어먹고, 모텔방비를 지원받았다는 점 등에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
- 나아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뺏어 모텔비를 가해자가 보태서 내고, 성폭력 후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대가성이 없다고 기소도 하지 않음.

- ②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초기 수사지원을 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끊음
- ③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제도
- ④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전문 지원 시스템 부재(상담소, 검경찰에 전문 부서 부재 등)
 - 현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소가 없고, 성매매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도 사용할 수 없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
- ⑤ 너무 약한 처벌 수위(벌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 문제라는 인식. 성인 성매수자의 존재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동청소년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자세.
 - 범죄를 위축시키지 못하는 처벌 수위
- ⑥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우선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 아동은 아첨법상 자발적 성매매를 한 아동으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것의 의미는 아첨법상 ‘대상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 되며, 그럼에도 성매수자가 아첨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지 개인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럼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성매수자는 이 피해 아동이라고 불리는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2.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¹⁵⁾

1) 성매매 관련 국제 협약

(1)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은 매춘행위와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치 않으며 또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

15) 조진경 외. 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pp14-17.

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며, 부녀자매매금지 등을 규정한 협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1962년 5월 14일부터 협약이 국내에 발효 중이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은 197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성차별에 대한 대표적 국제협약으로 1981년 9월 3일에 발효되었으며, 여성인신매매와 성매매 억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협약 당사국은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최소 4년에 한 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3)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의정서

유엔에서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폐해와 각국 정부의 공동 대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제노동, 노예제, 준노예적 관습에서 비롯된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일체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최초로 형성됐다. 이 의정서는 각국 정부의 대응이 예방(Prevention), 범죄자 기소(Criminal Prosecution), 피해자 보호(Victim Protection) 등 이른바 '3P'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권 NAP 권고 내용 및 평가

제 1기 인권 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중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은,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여성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 마련하며,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보호·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살펴보면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보호 부분에서는 초·중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에 관한 국민의식 개선, 탈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사업 등은 성실히 추진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성매매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성매매의 비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¹⁶⁾

그 후 제 2기 인권 NAP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추진과제로 유사 성매매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재권고 하였다.¹⁷⁾

(5)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위법한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의 제2선택의정서 제2조는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금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동성매매는 보수나 다른 댓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 아동음란물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 아동에 대한 표현이나 주로 성적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의미한다.

제3조 제1항 (b)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획득, 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 (c) 제2조의 아동음란물을 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및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택의정서에서 아동성매매는 보수와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대가는 돈 뿐만 아니라 상품, 서비스 또는 기호품을 의미하고 음식이나 숙소 또는 약 등 필수품을 교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선택의정서에는 아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만 18세 이하로 해석한다. 성매매가 불법이 아닌 국가에서는 종종 16,17세 아동들의 성착취가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인 국가에서는 범법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동 선택의정서 제8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면

16) 국가인권위원회,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45~47면.

17) 국가인권위원회,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50면.

서 특히 동 의정서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a)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특히 증인인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요청에 따른 적절한 절차 수정, (b) 피해아동에게 권리 및 역할과 절차의 범위, 시기, 진행상황 및 사건처리과정, (c) 아동의 개인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있어 피해아동의 견해, 요구 및 관심사를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취하고 고려할 것, (d)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 제공, (e)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보호와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 방지를 위한 국내법적 조치, (f)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증인의 안전보장, (g) 사건의 처리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상 제공명령 또는 판결집행의 불필요한 지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특히 법적·심리적 훈련과 같은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에게 사회복지 및 신체, 심리적 회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 아동이 법적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차별 없이 적절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9조제3항, 제4항).

2) 미국

(1) 18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2011년에 발간된 미국의 『아동 거래에 대한 복지적 대응책 수립(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수는 한 해 약 29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간주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3월 16일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법(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2011)”을 발의하였다. 2000년에 이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청소년 성보호 대책을 강화하고자 최근 보다 강력한 새로운 법안을 2011년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S.596)은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하게 성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각 주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과 연방의 입장이 서로 유

사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즉, 두 입장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 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는 완전히 다르게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의 2011년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아동·청소년을 일반 비행청소년이나 성인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온전한 범죄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어떤 전통적인 형사처분도 내리지 않게 하는데 2011년 새 법안의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경험에 대해 개별 상담치료 및 지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방식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⁸⁾

(2)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 방향

미국에서는 2000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이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UN이 TVPA를 근간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프로토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을 개발해 오면서 미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일명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로 불리는 이 정책은 미국 정부의 성매매 정책을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3P 전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첫째,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 예방(Prevention), 둘째, 성 착취자 기소(Prosecution), 셋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Protection)로 요약된다.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3P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아동·청소년성매매 대책이 주로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된 욕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성매매 여자 청소년이 인구사회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빈곤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고, 비자발적 가출을 한 경우가 많아 성매매 이전의 복잡한 문제 환경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¹⁹⁾

(3) 지원기관: 실종 및 착취아동신고센터(NCMEC)

아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인 ‘실종

18) 이유진외(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96-97면(조윤오 교수 집필).

19) 이유진외, 위의 글, 108면.

및 착취 아동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는 1984년에 미국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의 외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구이다. NCMEC의 임무는 아동 유괴와 성적 착취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이 실종 아동 찾기, 유괴 아동 피해자와 성적 착취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는다. NCMEC는 지금까지 670,500개의 아동 성착취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256,386명의 법무성 직원과 관련 전문가들을 훈련시켰다. NCMEC는 미국 내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국가법집행통신시스템(NLETS), 연방아동지원서비스(FPLS)19에서 제공하는 실종 명단, 수배명단과 미확인 명단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아동보호 비영리 기구이다.²⁰⁾

3) 캐나다

(1)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과 성매매 피해자지원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²¹⁾

캐나다 연방형법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조항은 18세 미만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에 의존하여 사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제212조 (2)항), 이를 지원, 교사,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한 경우 5년 이상 14년 이하 징역에 처함(제212조 (2.1)항), 성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수를 얻거나, 보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18세 미만자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제212조 (4)항).²²⁾

또한, 캐나다 형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연령이 너무 어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5살 이상의 나이 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성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라도 그것은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매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그리고 착취적 관계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보여준 성 관계에 대한 동의도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²³⁾

20) 성윤숙(2010),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2010 상반기 통권 제 3호, 46-47면.

21) 이유진외, 위의 글, 136면.

22)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 2012.12, 75면.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 및 관련 활동²⁴⁾.

① 성매매 예방 활동

캐나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정책은 일반 시민과 학교 선생님, 부모 및 보호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초기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다 아동보호 센터(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를 통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왜곡된 성 인식 변화 캠페인과 미디어에 의한 과장된 성산업 변화 활동 등을 강조한다.

② 성별근거 분석 시스템

캐나다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의 개인 욕구에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정책적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성별 근거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때 피해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사례관리 방식을 강조한다.

③ 국가 아동착취조정센터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아동착취조정센터(National Child Exploitation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이 기구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보다 원활히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4) 스웨덴 스톡홀름²⁵⁾²⁶⁾

(1) 개요

스웨덴 인구는 한국의 1/5이고, 정부 조직은 중앙정부와 20개의 county councils(지자체), 그 밑으로 290개 코뮌(구청)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소속으로 경찰, 지자체 소속의

23) 이유진외, 위의 글, 138면.

24) 이유진외, 위의 글, 150-151면.

25) 본 발제자는 2017. 7. 9-16.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의 지원으로 '혁신리더기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스웨덴 스톡홀름'과 '영국 런던'으로 다녀왔다. 두 국가의 방문내용을 발제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현재 유럽국가들의 현황과 야청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26) 외무부 무임소 대사 PerAnders Sunesson(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mbassador at Large for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행정위원회 PATRIK CEDERLOF(National Coordinator Against Prostitution Trafficking Social Development Unit.), MEGHAN(Talita 탈리타 쉼터 관계자)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정리함.

health care, 코문소속의 사회복지사로 나뉘어 있는데,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해서 일하도록 하기위해 3가지 단계로 나뉘었다. NGO 단체들은 정부와 분리해서 있다.

EU(2015)에서도 human trafficking에 28개국에 소속돼 있고, EU 소속 각나라에 national coordinator가 있다. GRETA라는 national coordinator와 별개의 그룹이 있는데, EU 나라를 다니면서 이 이슈에 대해 잘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룹이 있다. 특사의 주요 업무는 스웨덴 모델을 알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모델을 사용하도록 알리는 것이다.

성매수자 처벌법은 원래 특별법이었는데, 2015년 형법에 포함되었고, 성폭력 장에 포함되어 있다.

스웨덴은 법을 처음 만들 때 수요가 없으면 종사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수자는 처벌하지만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초를 유지해왔고, 그 취지에 기반해서 법 도입한 후 조사결과, 성매매가 반으로 감소했으며, 음성화 우려도 그렇게 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남녀의 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로 생각한다. 법 시행 후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함. 특히 법제정 이후 경찰전담부서에서 협업해서 일하기도 하여, 성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주변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함. 법을 제정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 다른 분야 교육이 필요하며, 경찰, 성제공자, 여성평등에 대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성매매 주제 자체를 정부에서 주요 현안으로 오랫동안 생각하였고 팔레르모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부유한 나라들, 구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지,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스웨덴 정부에서 생각했고, 스웨덴 정부는 그 report에서 빠진 부분, 구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왜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가?란 질문을 많이 받지만,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약자다. 사회적 약자로 보고 희생자라고 본다. 처벌하지 않는것의 중요 장점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사회복지 담당자랑 대화하기 훨씬 수월해졌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독일은 성매매종사자가 40만명에 달하고, 95%가 다른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독일에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조직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비교해봤을 때도 스웨덴의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CAP(Coalition Abolition Prostitution) international 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스웨덴 모델을 옹호하는 나라의 단체들이 소통하는 웹사이트이다. 유럽은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까지도 소통중이다. 이를 통해 국제간 연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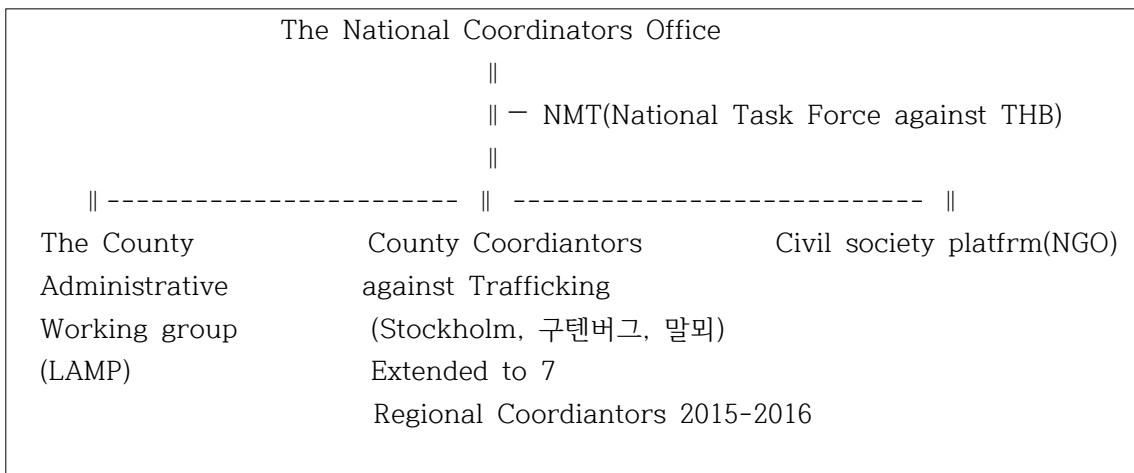
(2) 스톡홀름 County Council(행정위원회)

스톡홀름 주 행정위원회는 주에서 실시하는 의회와 정부의 결정에 책임있는 정부기관으로 정부 활동을 조정, 지자체의 발전을 보호, 여러 분야의 업무와 정보 취급하는 기구이다.

기관의 성매매 규제 관련 차별적 전략으로,

- ① 성매매와 인신매매: 정부의 의뢰에 따라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처하는 조율작업
- ② 업무
 - 국가 업무 조율: 성매매와 인신매매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 강화 촉진
 - 어린이 지원과 보호 제공에 특히 중점을 두고 인신매매와 착취 관련업무 조율 및 개발
 -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전한 복귀 조율
 -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구조)



- 국가 경찰
- 인신매매 분야 전문경찰
- 국경 경찰
- 검찰청

- 구텐버그 검찰센터
- 스웨덴 이민국
- 스톡홀름, 구텐버그, 말뫼에 있는 사회복지 특별부서
- BOSS-Unit
- 그밖에 필요에 따른 책임자

이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매일 만나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일을 한다. 스웨덴은 NGO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함. 2009-2013 성착취, 성매매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일했고, 13년 이후부터 포커스를 넓혀 착취에 관련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성매수자 범죄 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2015년 미성년자 난민 등록이 7만명 중 3만5천명이 스웨덴으로 옴. 그중 결혼 조혼, 성적학대, 모로코에서 오는 남자아동의 문제가 심각하다.

National Coordinators의 역할

-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지역경찰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다. 2015년 경찰조직을 변경했는데, 국가경찰1, 지역경찰 21개에서 국가경찰 1, 7개의 지역경찰로 변경했다. 그것은 중앙 경찰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
- NMT(special task force) : THB 피해자 보호, 교육에 중점을 둔다, 교육자료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든다.
- LAMP 중앙과 지역에 연결이 필요할 때. 290개 코문과 연결돼 있음
- County/Regional coordinators 6명
- NGO

(3) 쉼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트라우마 테라피 제공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Safe House에서 보호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의사와의 면담후 희망하면 트라우마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 주거, 교육, 심리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탈리타는 쉼터 중에 유일하게 국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스웨덴의 탈리타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중 80% 외국인, 20% 스웨덴인이다. 보

통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난민이다.

- ‘더블린 조약’으로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위험한 일로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은 조금이고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있다.
- 페미니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지만, 따로 있어야 함에는 공감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함

(4) 정리

- 스웨덴은 정부가 성매매, 인신매매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피해자 발굴과 지원, 귀국 지원, 성매수자 처벌과 범죄기록 집적,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전문가들이 행정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NGO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NGO 단체들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 인신매매 분야를 정부 각 부처 외무부, 사회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에서 모두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2016년에 스웨덴 정부대응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수립됐다. 스웨덴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진 자료다.
- 아동청소년은 16세 이하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6세부터의 성매매는 성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어린아이가 자해를 하거나, 장기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할 때 아동청소년을 따로 지원하는 법이 있지만, 성매매관련은 없다.
- IT 관련 법은 없고, 구매자를 잡기 위한 사이버상 경찰 TF팀이 있다.
성매매 사이트를 인지해서, 성구매자인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 문을 열어주면 주소를 알아내고 성매매 제안을 취소하고, 잠복해서 구매자를 잡는 방식.
- 스웨덴은 법무부장관이 포르노그래피 문제에 직접 대응하고 있었다.

5) 영국 런던²⁷⁾

(1) 성매매 정책

영국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나 성매매 업소운영은 불법이다. 한 장소에서 여러명이 성매매를 하면 불법이고, 거리성매매나 성구매 역시 불법이다. 성매매업소의 소유자나 조정자는 처벌되지만, 판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구매자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처벌이 가능하다.

27) 영국 런던에서는 아동보호기관으로써 가장 오래된 NGO인 Children's Society와 가장 규모가 큰 NGO인 NSPCC를 중심으로 대화를 요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용어 전면 폐지, 성착취로 규정

① 만 18세 이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2013년 법령에 아동성매매라는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 그전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도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구를 완전히 변경하여 성착취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됨. 이와 같은 법률개정에 대한 영국 NGO 들의 노력은 1995년부터 줄기자체 되었으며, 2005년 영국의 한 지역인 다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 다비에서 벌어진 일: 다비의 길에서 노는 여자아이들이 담배, 알콜, 마약, 성인들과의 성매매도 자발적으로 한다고 봤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과 일하던 한 NGO가 그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루밍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whistle blower' 라는 단체의 '실라 테일러'는 경찰의 인식을 돌리는 일을 시작하였고, 비행청소년이 아닌 성착취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자원이 투자되었고, 여자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용감하게 재판과정에서 진술함으로써 그루밍 프로세스에 의해 성착취가 일어났다고 결론이 났다.

- 법률명 Modern Slavery Act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30/contents/enacted>

- 2013년에 가장 큰 규모의 법령이 만들어 졌고, 최근 온라인 활동을 많이 반영하는 법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3) 피해자로 인식되는 과정

① national reference mechanism 이 있다,

- 섹션 2-D 에 의해 식별. 경찰,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의 비영리 기관에서 참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체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은 가출을 많이 했는지, 수상한 어른과 같이 있었는지, 비싼 물건을 갖고 있는지, 옷이 더럽고... 등이다.

- 피해자로 식별되면 옹호하고 변호하는 전문가 1명이 아이에게 연결된다. 이주민인 경우, 이민절차 문제는 지원받고, 법률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등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는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를 구속하는데 도움이 된다.

- 형량은 인신매매와 성착취는 다르며, 범죄정도와 몇번 숫자에 따라 다르다. 만 13세 이하 성착취 종신, 만 14-15 성착취 14년, 16-17 성착취 가해자 7년

(4) 사회복지서비스

- 성착취 아동을 위한 쉼터는 따로 없다.
- 아동보호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베이스 패넬(social care, 경찰, 보건관련, 의료 정신건강, 아동보호기관 등 Herb를 만들어서 지원한다)을 구성하여, 지역의 여러 아이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착취 위험 아이들과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1달 1번씩 하는 회의가 있다. 목적은 정보공유, 한 아이에 대한 case 공유. 그 아이에 대해 어떤 제안 사항. 위험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영역에서 한 아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들이 피해아동을 지원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은 guide line으로 만들어져 있다.
- 남녀 아동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며, 특히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있는 상황이 많아 더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적 편견이 성폭력은 여자아이에게만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다.
- 부모의 경우는 가족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알고 있었다고 간주되면 아동보호 list에 올라간다. social care service - sicial care plan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5) 영국 경찰

- 영국 경찰시스템은 43개로 이루어짐.
- NSPCC에는 40년동안 경찰로 일한 후 National Crime Agency에서 NGO로 파견되어 일하는 전직 경찰이 있다. 그들의 역할은 아동 보호 전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화 상담, 전문가 회의: 전략짜는 일. 전국적인 영국전반 법적, 전략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동보호법의 관점으로 보며, 한 아이를 두고 working group이 있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그루밍 감시체계
영국경찰청이 운영하는 CEOP의 한 부서에서 아이들의 성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팀이 있다. 그들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게 되면 NCA에 알리고 거기서 그루밍 범죄자를 체포한다.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자체 모니터링,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기만 가져도 처벌한다.

3.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 현 정책의 문제와 한계

(1) 인식의 문제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 노출된 위험도에 비해 보호대책마련 및 보호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아동·청소년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야 하고, 돌봄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 대상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돌봄과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부 구조와 정책의 문제

- ① 현재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광범위한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에서 성매매정책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 지원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는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지원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 성매매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가출과 성매수 범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현재 정부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 ② 2004년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구축된 지원체계는 성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자립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지원 목적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방지 정책을 대상별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③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여성과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체계의 문제

- ① 현재 성매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은 성매매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과 단순 가출 등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원시설이 있으며, 3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인턴십센터가 있다. 지원시설의 경우 총 14개가 있지만 서울지역에만 5개가 집중되어 있어 실태파악 후 지역에 증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시설(쉼터)에 대한 낮은 이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규율이 존재하는 공동생활을 꺼리는 십대들의 특성을 고려한 드랍인센터, 인턴십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과 일자리지원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지역별로 증설되어야 한다.
- ② 또 다른 지원체계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정교육체계와 11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1개의 중앙, 10개의 지역센터)가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넘겨진 후 분류심사원에서 성향이 파악되면 그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1호부터 10까지의 보호처분을 범죄 청소년에게 내린다. 그런데 성매매의 대상이 된 ‘대상청소년’의 경우는 경·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명단이 여가부로 통보되면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40시간의 재범방지교육인 ‘청소년성장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사실상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40시간 교육프로그램은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역할을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상담소나 교육센터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에 입각한 잘못된 규정이다.
- ③ 성매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 상담소의 부재
현재 성매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소는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상담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인상담소의 경우 아동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상담연계 후 상담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우선 적용법률인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학교폭력, 성적 및 진로 고민, 중독 등의 광범위한 청소년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성매매피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3) 성매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그리다.

(1)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 ①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에서 배제되며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 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성인 성매매자 보호처분의 경우는 일정 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위탁, 치료위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하는 현실은 문제이다. ‘성매매처벌법’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있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아청법에 의해 피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모순이며,²⁸⁾ “대상” 개념을 삭제하여야 한다.

②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아동·청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일반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성인 성매매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성매매단속과정에서 미성년판매자가 인지될 경우 성인 성매매정책에서처럼 자발·비자발에 초점을 두어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보아 보통 보호처분을 받도록 법원송치의견을 낸다고 한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로 볼 수 있음에도 ‘아청법’에 의해 불합리하게 처리 되는 것이다.²⁹⁾

28) 강지명,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175면 참조.

29) 강지명, 위의 글, 175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엄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적 대책에 상응하며, 피해자 개념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종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지원 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피해자가 될 수 있다.³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30) 강지명, 위의 글, 168면.

(2) 성매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센터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와 보호처분이 삭제된다면 훨씬 구체적이고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사이버아웃리치 기능이 포함된 전문 상담소를 중심으로 각 분야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아래는 통합지원 체계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언³¹⁾이다.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다른 위기·청소년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특수하다. 위기·청소년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은 양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지 못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의 성격 상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또다시 배제되고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매매’라는 이유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함께 다루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해당하는 법도 다를 뿐 아니라 성인과 십대의 특성도 매우 다르다. 큰 차이점은 첫째, 십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성인 성매매는 주로 업소형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개인형이라는 점이다. 셋째, 십대들은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각각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명의 활동가가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시설과 단체가 매우 소수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31) 김고연주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모델(가)”(미발표)을 인용하고 발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첨가하였다.

① 발견

무엇보다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에 처해 있는, 또는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발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아웃리치를 통해,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상담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전문성을 지닌 활동가들이 아웃리치에 함께 해야 하며, 아웃리치 활동가들은 모두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이버 상담 또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에 ‘사이버포레상담실’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 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성매매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포레 상담원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주거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는 2014년 현재 전국에 15개소로 서울 5개소, 부산·대구·경남 2개소, 광주·대전·전남·경북 1개소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쉼터가 매우 적으며 그마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침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쉼터 곧 자유롭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쉼터 입소를 꺼려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드롭인센터나 일시 쉼터 등이 필요하다.

③ 자활(일자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 자체도 구하기 어렵거나 일이 힘들고 돈이 적다는 점, 당장 돈이 필요한데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날에 오면’에서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다양한 임금 제도, 유연한 노동시간, 일을 배울 수 있는 노동, 인턴십 나아가 직장으로의 연계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교육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지향한다. 현재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10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성장캠프는 활동가들과 아동·청소년들이 40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양질의 시간을 갖는다. 무엇보다 활동가 선생님들과의

라포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계가 가능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대상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립/대안 학교

십대 여성들은 대부분 가출 상태여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에서의 낙인 등으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과 마포 자립학교가 운영 중이며 창원의 대안학교 1곳이 있다. 검정고시, 인턴십, 경제교육, 진로 탐색, 직업체험, 심리 및 정서적 자립 프로그램, 성매매 재유입 방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업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수업이 거의 1:1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력 취득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립/대안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⑤ 의료

성매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하고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면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막연히 건강을 자신하곤 한다. 설사 건강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건강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병원 진료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나는 봄’이 유일한 무료 진료소이다.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이해하는 의료진들로 구성된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⑥ 법률

‘대상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매우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다른 범죄 행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래 포주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성매매가 아닌 업소형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 여성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률단이 꾸려질 필요가 있다.

⑦ 상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상담소를 중심으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상담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소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다.

⑧ 긴급 구조

성매매 과정 어디에서나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구조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를 성착취, 성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문 1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삭제와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시스템 강화방안에 관한 토론문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오늘의 발제문들은 3가지 주제인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 외국 사례를 포함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방안이라는 대상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 개념적 측면과 사회복지시스템 및 외국 사례를 참조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시의적절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발제라고 생각한다.

3가지 논의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에 추가할 부분과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법 개념 관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상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므로써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이므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나 아청법에 의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청소년을 청소년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자로 협의로 해석한다면 최소한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가 되어야 하지만 모두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또한 아청법상 성매수 전 단계의 유인, 권유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성매수자가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면 상대방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되는 것에서 법률이 실질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법 개념상 모순점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저조

대상아동·청소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통계작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처분 송치자체가 저조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성매매처벌법 위한 소년보호송치 인원수

(단위 : 명(%))

연도	전체 범죄자수	소년보호송치 인원수	연도	전체 범죄자수	소년보호송치 인원수
1999	6,630	89(1.3)	2008	46,156	265(0.6)
2000	8,108	64(0.8)	2009	77,553	281(0.4)
2001	11,667	75(0.6)	2010	26,602	81(0.3)
2002	11,732	43(0.4)	2011	19,573	76(0.4)
2003	11,163	12(0.1)	2012	15,837	38(0.2)
2004	51	-	2013	15,548	18(0.1)
2005	325	-	2014	20,603	15(0.1)
2006	25,331	28(0.1)	2015	7,268	51(0.7)
2007	19,854	58(0.3)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매매관련 범죄자 중 소년보호송치되는 인원수가 많지 않고 1%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년보호송치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분일 것으로 보인다.

〈표2〉 소년보호사건 중 성매매처벌법 처분에 관한 접수인원수

(단위 : 명(%))

연도	접수인원수
2005	24
2006	57
2007	276
2008	294
2009	346
2010	132
2011	141
2012	118
2013	41
2014	40
2015	72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2015.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 중 성매매처벌법 처분에 관한 접수인원수가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346명이었으나 그 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40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5년 72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아동·청소년 보호법 제39조에 의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고 중앙센터 1개소, 지적장애를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센터를 포함하여 권역별로 지역교육센터 10개소를 지정하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로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표3〉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실적

(단위 : 명)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348	255	372	355	364	278	355	369

출처 :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수를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이후 급증한 것은 초범의 성매수 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된 것이

이유라고 하겠다.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판결문상 ‘피해자’가 아닌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으로 표시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성매수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수

(단위 : 명)

연도	성매수 범죄자수	성매수 피해자수(대상 아동·청소년)
2011	14	21
2012	34	58
2013	130	184
2014	258	305
2015	120	200

출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2-2016.

표4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의 수가 200명인데 비해 2015년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51명(표1),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수는 72명(표2)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가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은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보호처분을 폐지할 경우 새로이 구축되는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시스템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성매매 유입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시스템으로의 연결방안 모색

조진경 대표는 현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역할을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상담소나 교육센터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에 입각한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보호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경찰의 성매매피해청소년 발견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보호지원시스템과 연계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보호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다양한 연결고리 중 하나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제자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다.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문 2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책의 후순위가 아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들어가며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¹⁾이 세계 1위이고 행복지수도 매우 낮다. 경제적 성장의 뒀안길에서 사회적위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고 위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젠더불평등을 지속유지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²⁾들은 안전망이 부재한 길거리로 내몰리고 위험한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되었다가 다른범죄와 연루되어 어느 순간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위기는 안전망이 부재한 아동청소년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진단을 중심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국가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성착취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나올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생은 총 108명이다.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학생의 수는 약 8000명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12.1%에 해당한다. 올해 1월~3월 청소년 자살은 21명에 달한다. 경기 10명, 서울 4명, 부산 2명, 인천 2명, 광주 1명, 대전1명, 경남 1명으로 집계됐다.

출처 : 올해 1분기 청소년 자살 21명...대책 방안은? 2017.07.09 | 메디컬투데이

2) 본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통칭하여 청소년으로 표기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많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 왔고 아청법 개정 논의팀을 구성하여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³⁾ 당시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나온 담당 검사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폐지할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보호과장은 <성매매에 있어 청소년들이 자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상 청소년'으로 보호처분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강제 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제도를 삭제해 피해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몇 차례의 토론과 논의의 결과로 19대 때 아청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제출된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서명용지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19대 국회 회기만으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재정비하여 발의되었다⁴⁾.

왜 성착취⁵⁾ 범죄인가?

- 전세계적으로 아동성착취⁶⁾는 아동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로 성착취의 유해성은 아동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로 간주되어 왔다. 2016년 룩셈브르크에서 채택된 용어적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이 무언가(예, 이익이나 대가)를 위해 교환되는 성적활동에 참여했을 때는 성착취피해자'라고 하고 있다(출처 인용, 2016년 EPCPAT 아동성착취 수요에 대한 정의 보고서).

3) 2015년 3월23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4) 20대 국회에서 남윤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성매매 관련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계류 중이다.

5)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2003년 2월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티켓다방 등 각종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및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는 청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6)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란 영어로는 'Sexual Explo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매매(prostitutio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sex tourism),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ople for exploitation)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착취의 유형 중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prostitution)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전체 인신매매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180만 명의 아동들이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아동청소년’과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의 ‘대상아동청소년’로 나뉜다.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아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는 “청소년과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 없는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해입증을 하라고 하라고 하고 있다.

사례)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법률 제13조 위반 (성매매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대상이 된 **은 피해자가 아닌 ‘대상청소년’이라면서 피해자가 아님을 강조한다. 피고인도 있고 법에 규정된 범죄도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 고 한다.

-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아니한다(제26조)’고 되어 있으나, 처리과정은 가해 아동·청소년(제29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의 장 38조-40조까지는 선도보호라는 미명하에 대상청소년을 적발, 보호처분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자나 성매수자들에게는 이 조항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협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경찰은 알선자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를 잡겠다면서 일명 위장, 함정단속방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숨어버리게 하고 있음. 이러한 단속방식은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 아닌 실적중심으로 단속방식에 지나지 않음
 - 경찰이 ‘대상 아동·청소년’을 수사하여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 송치, 검사는 법원 소년부 송치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가 부적할 경우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 결정
 - 판사는 「소년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
- ⇒ 성매매 피해자는 결국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를 받고, 수사기록이 남게 됨.
- ※ 아청법 제40조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 ①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② 수강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④ 보호관찰 ⑤ 아동복지시설등에 감호위탁 ⑥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⑦ 소년원 송치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지원시설에 선도보호 위탁

- 결국, 절도나 성폭행을 한 가해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보호시설 위탁 처분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가해자의 위치에 처하게 됨 (아무리 처벌이 아니고 처벌되는 대상청소년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맞지 않음)

아청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들 사이의 모순이 발생한다. 즉

제13조⁷⁾에 의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로 보고 있지 않는 문제다.

- 대상아동청소년이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을 통보받은 청소년이나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등을 뜻한다.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소년보호 재판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아닌 보호가 주목적이라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전과자가 되지만 보호처분은 향후 건전하게 성장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년 보호재판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위기청소년 토론회에서 모 부장판사의 발언)고 강조하기도 한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

7)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개정되어 현행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고 할 때 결국 대상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착취 범죄의 피해로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 성착취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지원 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진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 회의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청소년 성착취⁹⁾ 피해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II. 보호분야 <5개 과제, 17개 시책> 중 <과제 II-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분야를 보면
 - (II-3-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의료·법률자문지원 강화(청소년자립지원과)
 - (II-3-2)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권익지원과,아청과,폭력예방과)
 - (II-3-3)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청소년자립지원과) 가 있다.
- 여성가족부의 각 과로 분산되어 있지만 어느곳도 전문적인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성매매피해자 보호체계의 하위체계 방식으로 보호중심적 관점인데 그나마도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6% 정도로 나타나고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성매매로 유입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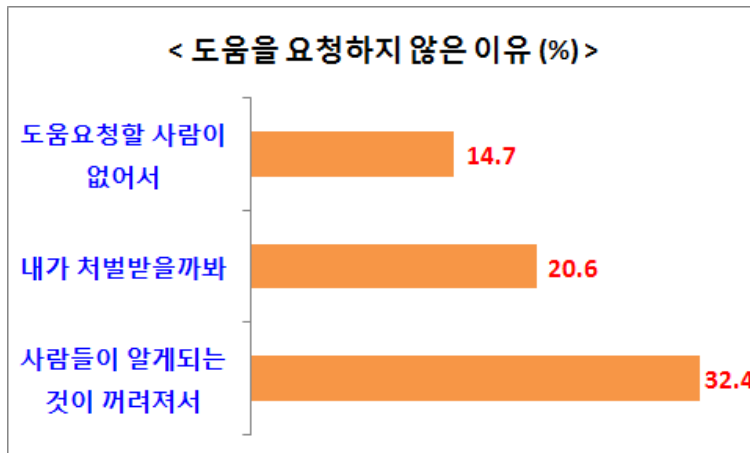
9) 2016년 6월27일 성매매방지추진점검단회의(제44차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16.2.22~5.31) 결과를 공유하고, 위반사범 총 8,502명(1,9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사범은 419명(168건)이며, 그 중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업주 41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41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동법 제13조 위반)가 340명(139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가 68명(24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가 11명(5건) 순이었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총 78명)에 대해서는 상담·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기본 40시간, 심화 20시간) 및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홍봉선·남미애(2010)의 연구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성매매의 주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채팅 41%(16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20.5%(8명), 부킹15.4%(6명), 전화방, 노래방 그리고 기타 경로가 각각 10.3%(4명), 유흥업소의 경우 2.6%(1명) 순이다.

가출을 하게 되면 힘든 거리 생활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지만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에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인터넷 채팅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⁰⁾

- 전 세계적으로 성착취문제의 일상화, 다양화 저연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의 취약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201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¹¹⁾ 아동청소년 성매매관련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이며, 16세 이하 응답자 중에서도 68.9%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건만남의 10명 중 7명은 온라인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성매수자들의 알선창구임
 - 피해를 당해도 48.6%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꺼려져서’가 32.4%, ‘내가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가 20.6%를 차지함.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



- 성착취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발제자들의 발제문에서 보여주듯이 각 국가들이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연령을 상향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 및 방지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에서 성

10)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절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제외받는 곳은 주로 채팅으로 인터넷의 영향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채팅과 랜덤채팅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1)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부분 보도자료 중 청소년 성매매관련 내용 인용함

매매를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성착취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권리보장과 피해회복등의 과정에 많은 국가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진화와 성산업시장의 확산 및 SNS를 통한 거래제안 및 유인방식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성착취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님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상업적 성착취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수요에 대한 대응, 기회의 차단방식이 마련되어 다각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문적 개입을 통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구해 왔다.¹²⁾ 문제의식의 변화가 정책을 변동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와 안전망 구축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자발/강제논쟁으로 성착취 범죄를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성산업 확산을 묵인방조 할 것인가?¹³⁾

나가며

현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예방을 위해 (1)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적 착취이며, 인신매매라는 인식 전환 (2)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및 보호지원 강화 (3) 수요차단정책으로의 전환-성매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 (4) 당사자 중심의 예방사업 확대 (쉽게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Drop-in 센터 방식)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위해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처럼 현행 대상청소년 및 선도보호의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수요차단 정책을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전체가 제대로 된 안전망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착취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국가와 지자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상청소년 개념을 삭제하여 성착취 범죄에 강력대응하면서 성착취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주거, 일자리,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지원)이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자료(보건복지부,2009년) 참조.

13) 미국의 국가 인신매매 정보 센터(the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 NHTRC)에 따르면 성착취 인신매매 사범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 위협, 거짓말, 거짓된 약속, 빚, 속임수 등이 포함된다. NHTRC는 이와 같은 강압적 방법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상업적 성은 성착취 인신매매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제동향)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문 3

변정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토 론 문

변정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성매매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권력의 문제, 사회의 문제입니다. 한 교수님은 글에서 ‘성매매는 돈을 매개로하는 성폭력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의 몸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 이전에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할 수 없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위의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청소년 보호방안과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두 바퀴가 있어야 피해청소년들 피해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 세분의 원고에서 모두 언급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장소’의 의미가 아닌 1년~2년 마다 위탁계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2명의 실무자들은 피해청소년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40시간 교육과 상담·사례관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업무 등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이 비록 성매매 재유입방지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상담·사례관리 지원이 교육효과와 시너지를 내면서 2011년 91.7%, 2012년~2016년까지는 95% 이상의 사회복귀율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중앙센터에서는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지역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지원은 ‘임파워먼

1) 40시간 기본교육을 받은 6개월 후 탈성매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트 중심의 사례관리 모델'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을 재인식하고 자기비하를 낮춰주어 역량강화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피해청소년들에게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이며 실무자들은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실무자들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여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숙 대표님의 발제문에서는 청소년 지원 단위의 실재를 보여주면서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관련 공백이 생기는 지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징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육참여 청소년 중 재학청소년 이 증가하고 있고 서로 다른 청소년들의 욕구(재학, 검정고시, 취업, 상담 등..)를 고려해 각 케이스에 맞는 전문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드롭인센터 제안에 동의하며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공간'뿐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상담자 등 전담인력을 24시간 배치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주은 입법조사관님 발제문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피해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인권침해, 함정수사 등의 대상이 되어 2차 피해 입는 현실은 현장에서도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발제자가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 간 연계 강화'와 '수사 및 재판 관련 매뉴얼 제작'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셨는데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단순 업무협약 체결이나 매뉴얼 제작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가부,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 담당자들에 대한 '(시간과 내용을 거려한) 현실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젠더 관점에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제문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 개념화가 서로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듯한데 성폭력과 성매매 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청소년들 중 성매매 피해에 앞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상당수이며 성매매 피해 장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과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진경 대표님 발제문에서 법률상 용어 정립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을 명확히 하는 법이 새로운 프레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법률상 용어 정립"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률상 용어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전담 부서 및 단위의 부재를 지적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탈성매매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실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업무(아웃리치, 조사동행,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와 역할은 실무자 수, 센터 규모 등 현실에 비해 과다합니다. 발제자가 강조하였듯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에 요구되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고려한 종합지원센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제문에서 성매매, 성폭력 피해청소년 모두 성착취 피해청소년으로 보아 통합적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성착취”라는 개념 아래 동일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짧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중앙 및 10개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운영주체	지정연도	연락처	비고
서울(3)	중앙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010-2369-1318	중앙기능
	서울센터	십대여성인권지원센터	2013	010-7705-1318	
	평화센터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09	010-6368-1319	지적장애 청소년 대상
부산(1)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06	010-3069-1318	
대구(1)	대구센터	(사)대구여성회	2009	010-3427-1319	
인천(1)	인천센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2017	010-9153-1318	
대전(1)	대전센터	성공회대전나눔의집	2006	010-9866-1318	
광주(1)	광주센터	광주YWCA	2006	010-5491-1318	
경기(1)	경기센터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2010	010-9683-1318	
강원(1)	강원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 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	2010	010-9471-1388	
전북(1)	전북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11	010-3325-8297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문 4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토 론 문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문 5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토 론 문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 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40
----------	-------

발의연월일 : 2015. 8. 7.

발 의 자 : 남인순·정진후·전정희
박남춘·이찬열·김상희
전순옥·김광진·안규백
진선미·유승희·강동원
의원(12인)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함.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

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를 “제15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상대방이나 피해자가”를 “피해자가”로, “보호·선도·교육”을 “보호·지원·교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원”을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아동·청소년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대상아동·청소년의”를 각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의 교육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제38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u>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u>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p>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u>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u> 말한다.</p> <p>8.·9. (생략)</p> <p>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u>상대방이나 피해자가</u>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u>보호·선도·교육</u>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제15조까지의</u>----- ----- -----.</p> <p><u><삭 제></u></p> <p>8.·9.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회의 책임) ----- ----- -----<u>피해자가</u>----- ----- -----<u>보호·지원·교육</u>----- -----.</p> <p>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 -----</p>

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피해아동·청소년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아동·청소년의-----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보호·지원
<삭 제>

등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

-----제13
조제1항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
동·청소년(이하 “성매매 피해아
동·청소년”이라 한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체 없이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삭 제>

<삭 제>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

<삭 제>

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감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감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

제45조(보호시설) -----

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 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삭 제>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제46조(상담시설) <삭 제>

②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 4. (생략)

<신설>

<신설>

5. ~ 7. (생략)

<신설>

-----.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의 교육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제38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98
----------	------

발의연월일 : 2017. 2. 13.

발 의 자 : 김삼화·조배숙·김관영
황주홍·김경진·김수민
장정숙·이태규·김종희
권은희·신용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구분하면 서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함.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피해아동·청소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제7호).
- 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 참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를 “제15조까지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를 “범죄의 피해자가”로, “보호·선도·교육”을 “보호·지원·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아동·청소년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를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3항의 죄

제31조제1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원”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를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전의 제2호) 및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각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병원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에 연계하여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사회 복귀 등의 지원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u>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u></p> <p>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u>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u></p> <p>8.·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제15조까지의 죄</u>----- ----- -----.</p> <p><u><삭제></u></p> <p>8.·9.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u>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u>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u>보호·선도·교육</u>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5조(사회의 책임) ----- ----- -----<u>범죄의 피해자가</u>----- ----- ----- -----<u>보호·지원·교육</u>----- -----.</p>
<p>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p>	<p>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p>

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3.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

1. -----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의 죄

2. 3.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3항의 죄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

-----피해아동·청소년의

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아동·청소년의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삭 제>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 조치 등) ① -----

제13조제1항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삭 제>

<삭 제>

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

<삭 제>

립지원

-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 4. (생략)

<신설>

-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제46조(상담시설) <삭제>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신 설>

5. ~ 7. (생략)

<신 설>

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병원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에 연계하여 주거나 일시 보

호하는 업무

-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사회 복귀 등의 지원
-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

